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089 제출연월일: 2024. 7. 2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18세 미만인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	제12조(결격사유) ①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
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	
수 없다.	
<u>1. 미성년자</u>	1. 18세 미만인 사람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